

2018.8.18. 실시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 행정법 7급(마 책형)

정답과 해설

7.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③ 확약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④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다.

[영역]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원칙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대판 2009. 4. 23. 2008두8918

② 틀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헌재 2002.11.28, 2002헌바45).

③ 옳음. 대판 1996.8.20, 95누10877

④ 옳음.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

memo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 ②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 ③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④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영역] 정보공개 > 정보공개법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16. 11. 10. 2016두44674).

② 틀림. ②와 같은 방법을 통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처분 의취소를 구할 소익이 유지된다. <판례>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 3. 26. 2002두6583).

③ 옳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④ 옳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3.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취소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소송에서도 허용된다.

memo

③ 소송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영역] 행정소송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정답] ③

[해설] ① 옳음. 행정소송법 제17조제1항

② 옳음. 행정소송법 제44조(제17조제1항)

③ 틀림. ③은 재심청구에 관한 내용인데, 행정소송법은 제31조에서 행정청이 아니라 제3자의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③번 지문은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를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로 바꾸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④ 옳음. 행정소송법 제11조(제17조제1항)

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관의 일종인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행정처분과의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④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이다.

[영역] 행정행위 > 부관 > 독립쟁송가능성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사후부담(사후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올바른 문장이다.

② 틀림. 판례는 부관 중에서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판례는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옳음. 부당결부에 해당하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09.12.10. 2007다 63966).

④ 옳음.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memo

5. 행정조사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 ㄷ.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ㄹ.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조사원은 「행정조사기본법」상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영역]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조사 > 행정조사기본법

[정답] ①

[해설] ㄱ. 옳음. 대판 2013.9.26, 2013도7718

ㄴ. 옳음.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2항

ㄷ. 옳음. 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제1항

ㄹ. 틀림.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조사원에 의한 실력행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memo

6.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 ㄴ.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ㄷ.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영역] 행정소송 > 가구제 > 집행정지

[정답] ③

[해설] ㄱ. 옳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점(예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만 유지된다. 따라서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당연히 집행정지결정은 실효되고 집행정지된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ㄴ. 옳음. 법원은 집행정지결정 후 그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행정소송법 제24조제1항).

ㄷ. 틀림. 거부처분에 대해 설령 집행정지결정(효력정지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은 판결의 기속력의 일반규정(제30조 제1항)만 집행정지결정에 준용하고, 기속력의 재처분 의무규정(제30조 제2항, 제3항)은 집행정지결정에 준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효력정지)의 이익이 없으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

ㄹ. 옳음.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7. 행정절차 및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

memo

한 것으로 본다.

- ②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 ③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역] 행정절차 > 행정절차법 > 청문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2017년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 많은 행정관계 법률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❶ 일정시점 내에 신고에 대한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수리여부의 통지) ❷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수리 간주)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건축법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신설(2017.4.18.)하였는데 건축법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제14조에서 신고의 수리여부의 통지규정만 두고 수리 간주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 틀림.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 10. 24. 2013두963).

③ 옳음. 신청에 의한 청문(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관한 올바른 내용이다.

④ 틀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대판 2014.5.16., 2012두26180),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된다(대판 2007.9.21, 2006두20631).

8. 甲, 乙, 丙, 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용 당시 甲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② 임용 당시 乙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乙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丙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한 경우, 비록 그 표현에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

memo

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증권 거래 등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 丁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의 파급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영역] 공무원법 > 공무원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정답] ③

[해설] ①② 모두 옳음. <판례>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7.5.11. 2012다200486).

③ 틀림. ③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판례>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7. 4. 13. 2014두8469).

④ 옳음. 대판 2017. 12. 22. 2016두38167

9.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ㄴ.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관할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국유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 ㄹ.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해서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ㄷ

memo

- ② 나, 다
- ③ 가, 나, 다
- ④ 가, 다, 라

[영역] 재무행정법 > 국유재산 > 무단점유

[정답] ③

[해설] 가. 옳음. 행정상 강제징수(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9.4. 2014다203588).

나. 옳음. 행정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0.5.12, 99다18909).

다. 옳음. 다의 경우 국유토지인 도시공원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대판 2014. 11. 27. 2014두10769).

라. 틀림. 라의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다수견해)은 변상금부과징수 외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본다(대판 2014.7.16. 2011다76402).

10.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②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③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면,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영역]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과 선결문제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행정소송법은 제26조에서 직권심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6조가 선결문제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에게

memo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11조).

- ② 틀림. 민사법원은 취소사유 있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민사법원은 취소사유 있는 행정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행정행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 ③ 옳음. 대판 2009. 4. 9. 2008두23153
- ④ 옳음. 적법한 행정처분에 위반한 것이어야 범죄(예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77. 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 乙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乙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甲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②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한다.
- ③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乙의 재량에 속하고, 사업계획 적합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乙의 재량에 속한다.
- ④ 적합통보를 받은 甲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영역] 확약과 단계적행정결정 > 사전결정(예비결정)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원고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계획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9.23., 2001두10936).

- ② 옳음. 설문의 적합통보는 사전결정(예비결정)에 해당한다.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종국적 결정(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단계에서 행정청은 나머지 요건만을 심사한다.
- ③ 옳음.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결정에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사업계획 적합여부 결정 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재량이 인정된다.

memo

④ 틀림. 부분허가와 예비결정은 구별된다. 설문의 적합통보가 만약 부분허가라면 ④는 맞는 지문이 된다. 설문의 적합통보는 부분허가가 아니라 예비결정이어서 부분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1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동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④ A허가에 대해 B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A불허가처분을 하면서 B불허가사유를 들고 있으면 A불허가처분과 별개로 B불허가처분도 존재한다.

[영역]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행정계획 > 인허가의제

[정답] ④

[해설] ① 옳음. 법적근거에 의해 인·허가 의제효가 인정된다.

② 옳음.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주된 인허가불허사유가 된다(절차집중효설).

③ 옳음. 대판 2004. 7. 22. 2004다19715

④ 틀림. 인허가 의제효가 인정되는 때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주된 불허가처분만 존재하는 것이지 의제되는 인허가불허처분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1.16. 99두10988).

13.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memo

-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역] 지방자치법 > 주민의 권리 > 감사청구

[정답] ③

[해설] ① 옳음. 헌재 2015. 4. 14. 2015헌마325

② 옳음.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③ 틀림.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은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이다(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④ 옳음. 대판 2016. 7. 22. 2012추121

1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규정의 일체성에 의해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을 인정한다.
- ② 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③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영역] 행정행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과 판단여지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재량과 판단여지가 구별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다수설은 재량은 효과선택의 문제이고 판단여지는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양자를 구별한다. 그러나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을 부정한다.

② 옳음. 대판 2001.2.9. 98두17593

memo

- ③ 옳음. 대판 2001.2.9. 98두17593
- ④ 옳음. 대판 2002.9.24. 2000두5661

1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기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된다.
- ② 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③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영역]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계획

[정답] ①

[해설] 판례에 의할 때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5두1893).

memo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이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 ㄴ.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ㄷ.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적 활용이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①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영역]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정답] ②

- [해설] ㄱ. 틀림.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ㄴ. 옳음. 행정제재(예 과징금)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ㄷ. 옳음. 현재 2011. 10. 25. 2009헌바140
- ㄹ. 틀림.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나 과태료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효력이 소멸된다. 과태료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부과된 과태료를 불납하면 행정상 강제징수 된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

memo

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는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고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
- ④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영역] 공용부담법 > 토지보상법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정답] ③

[해설] ① 옳음. 토지보상법 제72조, 제74조의 사용토지 또는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은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판례> 토지보상법 제72조가 정한 사용토지에 대한 수용청구권은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대판 2015.4.9., 2014두46669).

② 옳음. <판례>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4. 13. 2016두64241).

③ 틀림. 토지보상법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만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8. 5. 15. 2017두41221).

④ 옳음.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기준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가 가능하다. <판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

memo

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3. 8. 22. 2012다3517).

18.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ㄷ.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ㄹ.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영역] 행정심판 > 재결 > 가구제

[정답] ④

- [해설] ㄱ. 옳음.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ㄴ. 옳음.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의 하나로 간접강제를 행정심판법이 최근 도입하였다(제50조의2).
 ㄷ. 옳음. 행정심판법은 가구제제도로 집행지지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임시처분에 관한 내용이다(제31조).
 ㄹ. 옳음. 최근 행정심판법은 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제43조의2).

memo

19.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실현하려 하자 점유자들이 이를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 ②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람에게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영역] 경찰행정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답] ①

[해설] ①의 경우,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판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20.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국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③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

memo

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④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영역] 재무행정 > 조세행정 > 과세전적부심사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② 틀림. ②의 경우 국세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분으로 무효이다. <판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6. 12. 27. 2016두49228).

③ 옳음. 대판 1995. 8. 22. 95누3909

④ 옳음. 대판 2012. 10. 18. 2010두12347

- 끝 -